

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가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7. 16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



1. 건 명: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결정 통지서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불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6. 7. 22. ~ 2026. 8. 5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(목포 교육로41번길 8, 2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ax: 0503-8803-0624), 이메일(wonnnny43@korea.kr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세원(Tel 061-280-01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: 2026.7.22.~2026.8.5.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박**	'59.09.17.	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**	행정처분 사전통지서 (의견제출 통지)	상기인은 2025. 4. 21., 23.~25., 28., 29., 2025. 5. 7.~8. (8일) 주식회사정원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일인 2025. 5. 12.에 총 3일을 신고하지 않고 2025. 5. 13.에 구직급여 189,312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 합계 1,451,390*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*부정수급액 189,312원,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,262,078원	수취인부재 폐문부재
2	박**	'90.11.17.	전남 목포시 양을로****번길 **	행정처분 사전통지서 (의견제출 통지)	상기인은 2025. 7. 1.~5., 7.~11. (10일) 삼영기업의 SK Hynix M15 Ph-3 Project 전기공사 2공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5. 7. 11.에 신고하지 않고 2025. 7. 14.에 구직급여 660,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 합계 1,848,000*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*부정수급액 660,000원,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,188,000원	수취인부재 폐문부재

2026년 7월 16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

